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박지윤 아나운서, 뉴시스에 형사소송 “해킹 사진 등 게재로 명예훼손”

KBS 박지윤·최동석 아나운서의 사적인 사진 유출을 다룬 언론 보도가 사생활 침해로 증폭시키자 해당 아나운서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건진 KBS 아나운서팀장은 “두 아나운서가 미니홈피를 해킹한 해커와 뉴시스, 뉴시스 이 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는 지난달 29일 새벽 박 아나운서의 미니홈피에 비공개로 실렸던 사진 20여 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되자 이날 오후 1보를 전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진들을 일부 모자이크해 게재했다.

‘20대 후반의 지상파 인기 여자아나운서 X’로 박 아나운서를 지칭한 뉴시스는 “X와 그녀의 애인이 노골적인 애

정행위를 하는 장면”, “승용차 안, 침대 등지에서 키스를 나누는 등 흐트러진 모습으로 연인과 애정을 표현”, “신체 노출 수위도 상당”, “X가 침대에서 애인과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에는 정체 불명의 또 다른 남자가 함께 누워 있다. 특히 이 사진을 놓고 온갖 외설적인 추측이 난무” 등의 표현으로 보도했다.

조건진 팀장은 “최 아나운서가 뉴시스 기자에게 연락해 사진과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X 여자아나운서〉의 은밀한 사생활 사진 유출 파문이라고 제목을 단 데일리안도 “현재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그나마 수위(?)를 조절한 20여 장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파문’을 증폭시켰다. 이외에 여러 인터넷 매체들이 ‘인터넷 개인 공간에 대한 해킹’과 ‘사생활 및 인권침해 위험’은 뒷전인 채 해킹사진을 게재하거나 ‘적나라’, ‘노골적’, ‘상당한 노출’ 등의 선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은 박 아나운서의 기사를 주요 기사로 배치하지 않았지만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박지윤 아나운서 사진’, ‘박지윤 아나운서 미니홈피’ 등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번졌다.

네이버는 두 아나운서의 요청으로 1일 오후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과 실시간 검색어에서 두 아나운서와 관련된 내용을 차단했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2일

대법원 “공익 목적 비판 신문 사설은 정당”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언론 논평은 일부 단정적인 어법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주)레이크힐스 골프장이 제주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할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작성된 신문 사설의 주장이나 논평은 일부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취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과 관련, “신문 사설의 의견 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취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 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불법 행위

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레이크힐스 골프장은 제주일보가 2005년 3월 11일자 신문에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 요금을 인상한 것은 도내 골프장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관광산업 침체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2007년 3월 5일

‘바로잡습니다’ 없는 포털 오보 정정 ‘미적’ ... 지난해 법원 “사실확인 책임”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청약 부금을 대신 내준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간호사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노동부 홍보기획팀은 지난주 주택청약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 전화 폭주로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다. 지난 11일 한 신문 1면에 실린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주택청약 부금을 대신 내 준다’는 기사와 13일 다른 신문 1면에 실린 ‘간호사, 초·중·고 교사는 2년 뒤 정규직 전환 적용 안 된다’는 기사와 관련한 문의였다. 두 기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모두 ‘오보’였다.

하지만 이들 기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에 반나절 넘게 걸리면서 ‘오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사에 달린 댓글만도 수백 개인데다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로 기사가 퍼올려졌다.

노기혁 노동부 홍보팀장은 “포털사이트 등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는 민원인들의 문의가 폭주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느라 진땀을 흘렸다”며 “포털의 특성상 뉴스 유통이 순간적으로 확산돼 잘

못된 정책 기사의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은 이튿날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냈지만, 이는 포털사이트 주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이 아닌 두 기사는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다. 검색어에 따라 본 기사와 정정보도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기사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 홍보팀은 포털 회사에 항의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앞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항의해 봤지만, 포털 쪽은 언론사 쪽에 책임을 미루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전여욱 한나라당 의원이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포털의 사실 확인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민사상 책임만 묻고 있을 뿐이다.

이는 통신사 등 다른 뉴스 생산자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 싣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언론사들의 경우와 대비된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통신사 기사를 실어도 언론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쪽은 오보로 판명 난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태도다. 박선영 네이버 뉴스티임장은 “기사 정정은 편집권의 문제여서 모든 권한은 언론사에 있다”며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엔지오후과)는 “적어도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는 사실관계 등을 사전에 신중히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보로 판명될 경우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8일

법원, ‘백성학 녹취록’ CBS 보도 일부 금지 “‘국가정보 유출’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경인TV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CBS가 보도해 온 ‘백성학 녹취록’에 대한 일부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백성학 회장이 CBS와 CBSi를 상대로 지난 3월 22일 제기한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CBS가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씩을 백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찰 수사에서 백 회장이 미국으로 문건을 보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백 회장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면서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보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특정한 내용은 △백 회장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 △녹취록에 백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활동의 전모가 담겨있다는 내용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의 주장만 담고 있는 내용 △검찰의 수사결과가 녹취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 등 4가지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7일

외교부, 'PD수첩' 반론보도청구 승소 MBC, 17일 반론 방송...항소 여부 논의 중

MBC <PD수첩>의 동원호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외교통상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재15민사부)은 지난 12일 "피고(MBC)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면서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외교통상부)에게 매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론보도문으로 "외교통상부는 납치 해적들 및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BC는 17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이와 별개로 항소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8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을 다룬 MBC <PD수첩> '피랍 100일,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 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당시 언론중재위는 MBC에 반론보도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지만 MB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진행했다.

미디어오늘 2007년 4월 18일

전여옥 '팽' 보도한 CBS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불충분'... 전 최고위원 지난해 CBS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C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BS는 지난해 11월 14일 라디오 <뉴스레이더>(오전 8:00~9:00) 2부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전여옥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 진영에서 밀려

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가 전 위원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다음 날인 11월 15일 변상욱 기자는 같은 코너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심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정중히 사과하고 CBS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 텍스트를 삭제했다.

그러나 전 위원 측은 보도 직후 CBS와 CBSI, 변상욱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변 기자는 13일 "나름대로 정황증거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고 전여옥 위원을 인신공격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던 점이 참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변 기자는 이 일로 사내 인사위원회에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미디어오늘 2007년 3월 13일

'바다이야기 보도' 관련 소송 노 대통령 조카에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사행성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본보와 조선일보, MBC 등을 상대로 낸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노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행성 게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기 제작 회사와 대통령 조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주요 내

용 또한 객관적 진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기사 때문에 노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씨는 현직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의 공적인 인물"이라며 "공적인 인물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의 비판은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지난해 8월 21일자 A3면에 '노지원 씨 증자자금 누가 왜 냈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노 씨가 2003년 9월 우전시스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증자 대금을 전액 빌려 조달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전시스템은 통신기자재 제조·판매업체로 2006년 3월 '바다이야기' 제작 회사인 '지코프라이프'에 인수합병됐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11일

문화부, 동아에 패소

문화관광부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문화부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19일 A1면 〈이 참에 한 건...황당한 태클〉 기사에서 문화부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장·차관이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 대한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축구협회와 문화부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볼 때 문화부가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이기는 했지만 기사의 전체 취지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30일자 신문에 이 내용을 〈‘보도의 중요한 부분 진실이면 다소 과장된 표현 있어도 무방’〉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2007년 4월 4일

월간조선, 한겨레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한겨레 음해 안기부 문건 보도’ 항소심서

지난 97년 작성된 한겨레를 음해하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2001년 4월 보도한 월간조선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조용구)는 9일 “한겨레를 친북, 좌익 성향으로 규정하고 광고수주를 위해 공기업을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문

건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포했다”며 한겨레가 월간조선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는 지난 2004년 10월 1심에서도 2,0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월간조선에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

도문을 신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1심에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당시 안기부 권영해 부장과 박일룡 1차장에 대해서는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10일

법원, KBS ‘서울1945’ 손배소 기각 “드라마 성격상 허용되는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유족들이 “KBS 드라마 〈서울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가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됐다고 볼 수 없으며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일부 후원을 받았다는 합리적 수준의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되는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중대한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8월 KBS 〈서울1945〉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총리를 ‘여운형 암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해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1945〉를 연출한 윤창범 PD는 이번 판결에 대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과 피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재판부가 팩트와 허구를 잘 분석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남발되지 않아야 하고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이 〈서울1945〉에 대해 제기한 형사 소송은 담당 PD와 작가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 4차 공판이 열린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9일